

2023년 대비 포인트민법 객관식 정오표

페이지	수 정 전	수 정 후
p.35	36번 2번 지문	삭 제
<p>p.637. 지문과 해설 모두 수정! (매우 중요)</p>	<p><24번 4번 지문> “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”</p> <p><24번 4번 해설> “지료는 무상이라고 한다(1995.2.28., 94다37912).”</p>	<p><24번 4번 지문> “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.”</p> <p><24번 4번 해설> “지료는 유상이라고 한다(2021.4.29., 2017다228007)”</p> <p>※ 이 쟁점은 반드시 p.659. 57번 문제로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</p>

p.623. [213] ④해설 추가

☞ 명의수탁자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뿐이어서,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수탁자가 위 토지를 매도하여 수령한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탁자에게 어떠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.

p.766. [54] ①, ②, ③ 해설 교체

① (○), ② (×), ③ (○) : [1]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,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,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,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. [2]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,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(대판 1998. 10. 2. 98다27197).

p.1186. [118] ㄴ. 해설 교체

ㄴ. (×) : 해제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(제548조 제2항). ☞ 지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제748조와 제749조의 내용인데, 사안은 해제의 경우이므로 제748조와 제749조가 아니라 제54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.